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통합적 진단 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종합상황실, 의료안전예방국, 손상예방관리과를 그동안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종합상황실 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고,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 건강위해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며,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감염병관리과, 의료대응지원과, 신종병원체분석과, 항생제내성관리과, 백신수급과, 건강위해대응관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대응센터 15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만성바이러스연구과, 치료임상연구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백신연구개발총괄과, 병원체자원관리과, 백신임상연구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별표 8)의 4·5급 직급에
기 포함되어 있는 간호사무관을 본문 규정(제22조 제2항)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23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시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
원표(별표5 및 6)에서 '보건연구사' 직급을 감축해야 했으나,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직급으로 감축된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0. ~ 3.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0호 중 “업무에”를 “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질병대응센터의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제9조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한센병”을 “엠펙스”로 한다.

15. 한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제11조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관련된”을 “관련된 감
시도구 및”으로 한다.

제12조제8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만성질환관리과·만성질환예방과·희귀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분석과·건강위해대응과·손상예방관리”를 “만성질환총괄
과·만성질환예방과·희귀질환관리과·건강영양조사분석과·건강위해
대응과·손상예방관리”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만성질환관리과장”을 각각 “만성질환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6호) 중 “조사·관리”를 “조사·예방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기획·조정
4.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관련 관계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만성질환에 관한 감시·조사·분석 및 정보생산·홍보
12. 만성질환 관련 국내외 협력

제13조제6항제1호 중 “기획·조정 및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지역사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
7. 만성질환 진단 표준화 분야 국내외 협력
6. 만성질환 국가 진단의학표준실험실 운영 및 질 관리

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연구기획과·연구지원”을 “연구기획과·생명과학연구
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지
원과장”을 각각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동기기실 운영 및 관리

제15조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관리·운영 총괄

7. 연구원 내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운영·관리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건의료·의과학 분야 연구데이터 등록·기탁 및 분양·활용에 관
한 사항

6.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7.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및 관리

제16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체 연구자원의 제공 절차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제5항제2호 중 “생산·관리 및 공유”를 “생산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기법”을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운영
5. 헬스케어 데이터의 분석·활용 교육 및 대내외 협력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백신 신기술 연구개발

제22조제2항 본문 중 “만성질환조사과”를 “만성질환관리과”로, “만성질환조사과장”을 “만성질환관리과장”으로,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성질환조사과장”을 “만성질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정보 분석 및 관리”를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5

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중전의 제15호) 중 “검역소간”을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중전의 제17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한”으로, “역학조사”를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성질환조사과장”을 “만성질환관리과장”으로 한다.

2. 관할구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 발생정보·환자정보의 분석 및 관리

4.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지도

18. 관할구역 내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79”를 “4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8”을 “475”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3”을 “54”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1”을 “22”로 하며,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을 “24”로 하고, 보건연구사 “91”을 “9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81”을 “478”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77”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3”을 “54”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1”을 “22”로 하며,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을 “24”로 하고, 보건연구사 “91”을 “90”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1조 관련)

1. 질병관리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위기대응분석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 개발담당관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위기대응분석관 역학조사분석 담당관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2024년 6월 30일까지
4)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 당관	10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2024년 6월 30일까지
5)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1명 (4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감염병위기대응국 의료대응지원과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7)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 분석과	10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8)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7명 (4급 1명, 5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9)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10)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11)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6월 30일까지

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 관리과	6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 러스연구센터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국립감염병연구소 만성바이 러스연구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 연구과	7명 (연구관 4명, 연구사 3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국립감염병연구소 인수공통 감염연구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7)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연구	1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개발총괄과	(5급 1명, 7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4명)	
8)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 관리과	7명 (연구관 3명, 연구사 4명)	2026년 3월 31일까지
9)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임상 연구과	7명 (연구관 3명, 연구사 4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53명 (6급 10명, 7급 13 명, 8급 20명, 9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2조 관련)

제32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② (생략)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 업무에 관한 사항	10. ----- -- <u>업에</u>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u>질병대응센터의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u>
⑥ 결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15. <u>한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u>
⑦ 에이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성매개감염병·인체면역결핍	3. -----

바이러스감염증·후천성면역결핍증 및 <u>한센병</u>(이하 “성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4. ~ 11. (생략) 제11조(감염병진단분석국) ① ~ ⑤ (생략) ⑥ 매개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원충성질환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u> 3.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u>관련된</u> 진단제제의 개발·평가 및 보급 ⑦·⑧ (생략)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 ⑦ (생략) ⑧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청 내 공동기기실 및 중앙공급실 운영</u>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 ③ (생략)	----- ----- <u>엠폍스</u>----- ----- ----- 4.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염병진단분석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6. ----- -- <u>관련된 감시도구 및</u>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만성질환관리국에 만성질환관리과 · 만성질환예방과 · 희귀질환관리과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건강위해대응과 · 손상예방관리과 및 미래질병대비과를 두되,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만성질환예방과장 · 희귀질환관리과장 ·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 건강위해대응과장 · 손상예방관리과장 및 미래질병대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1. · 2. (생 략)

3.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 · 조사 · 분석 및 정보생산 · 홍보

<신 설>

④ ----- 만성질환총괄과 · 만성질환예방과 · 희귀질환관리과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건강위해대응과 · 손상예방관리-----

-- 만성질환총괄과장-----

-----.

⑤ 만성질환총괄과장-----
-----.

1. 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기획 · 조정

5. · 6.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관

4. · 5. (생 략) 6. 만성질환 <u>조사 · 관리</u>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7. <u>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u> <u>및 운영</u> 8. (생 략) <u><신 설></u> 9. <u>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u> <u>및 국내외 협력</u> 10. (생 략) ⑥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u>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u> <u>획 · 조정 및 시행</u> 2. <u>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 평가</u> <u>및 개발</u> 3. <u>만성질환 예방수칙 개발 및</u> <u>제공</u> 4. <u>만성질환 관련 정보생산 · 홍</u> <u>보 및 국제협력</u> 5. (생 략) 6. <u>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전문</u> <u>인력의 교육 및 양성</u>	<u>련 관계부처 협력에 관한 사</u> <u>항</u> 8. · 9.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10. ----- <u>조사 · 예방관리</u> --- ----- 7. <u>만성질환에 관한 감시 · 조사</u> <u>· 분석 및 정보생산 · 홍보</u> 11. (현행 제8호와 같음) 12. <u>만성질환 관련 국내외 협력</u> <u><삭 제></u>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⑥ ----- -----. 1. ----- <u>시</u> <u>행</u> 2. <u>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u> <u>관리사업 지원</u> 3. <u>지역사회 아토피 · 천식 예방</u> <u>관리사업 지원</u> <u><삭 제></u>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u>만성질환 국가 진단의학표준</u> <u>실험실 운영 및 질 관리</u>
---	---

<신 설>

7. (생 략)

8. 만성질환 진단 표준화 및 질 관리

<신 설>

9. (생 략)

⑦ ~ ⑪ (생 략)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생 략)

② 연구기획조정부에 연구기획과 · 연구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연구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7. 만성질환 진단 표준화 분야 국내외 협력

5. (현행 제7호와 같음)

<삭 제>

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9호와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구기획과 · 생명과학연구기반-----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신 설>

4. ~ 7. (생 략)

<신 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①·②
(생 략)

③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보건의료·의과학 분야 공공
데이터 개방 기술 개발

3. ~ 5. (생 략)

<신 설>

<신 설>

5.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관
리·감독에 관한 사항

6. ~ 9. (현행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10. 공동기기실 운영 및 관리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연구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관리·운영 총괄

7. 연구원 내 산업재해 관련 안
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운영
·관리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보건의료·의과학 분야 연구
데이터 등록·기탁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사항

3. ~ 5. (현행과 같음)

6.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7.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및
관리

6. (생 략) ④ 바이오뱅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⑤ 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코호트 역학자료 <u>생산·관리 및 공유</u>에 관한 사항 3.·4. (생 략) ⑥ (생 략) ⑦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스케어 인공지능 <u>기법</u> 및 기술 개발 2.·3. (생 략) 4. <u>미래의료·생물정보학 관련 연구</u> 5. <u>유전체, 줄기세포 등 보건과학 연구정보의 개발·수집·분석 및 국제협력연구</u>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①·②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u>시체 연구자원의 제공 절차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⑤ ----- -----. 1. (현행과 같음) 2. ----- <u>생산 및 관리</u> ----- 3.·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u>연구</u> ----- ----- 2.·3. (현행과 같음) 4. <u>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운영</u> 5. <u>헬스케어 데이터의 분석·활용 교육 및 대내외 협력</u>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백신연구를 위한 기반 신기술 개발

④·⑤ (생략)

제22조(질병대응센터) ① (생략)

②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감염병대응과·진단분석과 및 만성질환조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진단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만성질환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만성질환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백신 신기술 연구개발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질병대응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만성질환관리과를 -----

----- 만성질환관리과장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 만성질환관리과장 ---

-----.

③ (생 략)

④ 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정보 분석 및 관리

<신 설>

2. (생 략)

<신 설>

3. 대상·집단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4. ~ 14. (생 략)

15. 관할구역 내 검역소간 연계 위기대응훈련 기획 및 평가

16. (생 략)

<신 설>

17. 그 밖에 감염병 예방·대응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수립·시행

2. 관할구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 발생정보·환자정보의 분석 및 관리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지도

<삭 제>

5. ~ 15. (현행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6. -----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간 -----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18. 관할구역 내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19. -----
-- 관련한 -----

구축·운영 및 <u>역학조사</u> 지원 ⑤ (생 략) ⑥ <u>만성질환조사과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⑦ (생 략) 제32조(한시정원) ① <u>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중 1명(수의사무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② (생 략)	----- <u>현장</u> ----- ⑤ (현행과 같음) ⑥ <u>만성질환관리과장</u>----- -----. 1. ~ 9.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한시정원) <삭 제> (현행 제2항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9	476	-3
일반직 계	478	475	-3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3	54	+1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1	22	+1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24	-4

보건연구사	<u>91</u>	<u>90</u>	-1
•	•	•	
•	•	•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1</u>	• <u>478</u>	-3
•	•	•	
•	•	•	
일반직 계	<u>480</u>	<u>477</u>	-3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53</u>	<u>54</u>	+1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21</u>	<u>22</u>	+1
•	•	•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 ·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 기 또는 시설서기	<u>28</u>	<u>24</u>	-4
•	•	•	
•	•	•	

보건연구사	<u>91</u>	<u>90</u>	-1
•	•	•	
•	•	•	

[별표 1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제3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u>1</u>	<u><삭 제></u>	-1
일반직 계	<u>1</u>	<u><삭 제></u>	-1
<u>수의사무관</u>	<u>1</u>	<u><삭 제></u>	-1